

3 실습기관

□ 실습기관의 자격 요건

○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실습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.
([참고 1] 실습기관의 유형 및 예시 참조)

- 「평생교육법」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
- 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에 따른 시·도평생교육진흥원
- 「평생교육법」 제21조에 따른 시·군·구평생학습관
-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제69조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
-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

가.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인가·등록·신고 된 시설·법인 또는 단체
 나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
 다.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·법인 또는 단체

- 양성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을 선정하고, 협약을 체결한다.
 - 「평생교육법」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어야 한다.
 - 평생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.
 - 실습생의 보건·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.
 - 실습생의 현장교육 및 실습지도가 가능한 기관이어야 한다.

[참고 1] 실습기관의 유형 및 예시

구분	기관유형		예 시	
평 생 교 육 사 의 평 생 교 육 실 습 과 목	① 유형	국가평생교육진흥원	국가평생교육진흥원	
		시·도평생교육진흥원	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,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, 대구평생교육진흥원,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,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,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, 광주평생교육진흥원, 인천평생교육진흥원, 울산평생교육진흥원, 대전평생교육진흥원, 부산평생교육진흥원,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,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,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	
		시·군·구평생학습관	평생학습관, 공공도서관, 문화원, 연수원·수련원, 박물관, 복지관 등 (교육청으로부터 시·군·구평생학습관으로 지정받은 기간에 한함)	
	② 유형	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지정기관	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설치·지정 기관	
		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기관	당해연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 기관	
	③ 유형	평생학습도시	시·군·구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전담부서 등	
국가·지자체 평생학습 추진기구		광역시도청/시·군구청/시도교육청/지역교육청 내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업무담당 부서 등		
④ 유형	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	대학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, 학교평생교육사업(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사업, 방과후학교 사업 등) 수행		
⑤ 유형	평생교육시설 신고·인가 기관	유·초·중·고·대학부설/ 학교형태/ 사내대학형태/ 원격대학형태/ 사업장부설/ 시민사회단체부설/ 언론기관부설/ 지식·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		
그 밖 의 다 른 법 령 *	⑥ 유형	평생직업교육학원	학원설립운영등록증 상 평생직업교육학원 형태 등록 여부 확인 (학교교과교습학원 형태는 인정 불가)	
	⑦ 유형	기관형 교육기관	주민자치기관	시·군·구민회관, 주민자치센터 등
			문화시설기관	도서관, 박물관, 미술관, 과학관, 지방문화원 등
			아동관련시설	아동직업훈련시설, 아동복지관, 지역아동(정보)센터 등
			여성관련시설	여성인력개발센터, 여성(복지, 문화)회관 등
			청소년관련시설	청소년지원센터, 청소년수련시설, 청소년문화의집 등
			노인관련시설	노인교실, 노인복지(회)관 등
			장애인관련시설	장애유형별 생활시설, 장애인복지관 등
			다문화가족관련시설	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
	⑧ 유형	훈련·연수형 교육기관	직업훈련기관	공공직업훈련시설, 지정직업훈련기관 등
	⑨ 유형	시민사회 단체형 교육기관	연수기관	공무원연수기관, 일반연수기관 등
			비영리민간단체	전국문해·성인기초교육협의회, 한국평생교육학회 등
			비영리 사(재)단법인	한국평생교육사협회, 한국문해교육협회 등
청소년단체			한국청소년연맹, 청소년단체협의회 등	
여성단체			여성회, 여성단체협의회 등	
노인단체			대한노인회, 전국노인평생교육, 단체연합회 등	
시민단체	NGO, YMCA, YWCA, 환경운동연합 등			
기 타		그 밖의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단체		

*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기관의 경우 반드시 해당 설치·운영 법적 근거 및 평생교육 사업 수행 여부 확인

4

이수요건

- (교과목 이수요건) 현장실습 취지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선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실습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.
 - 대학 및 기관 :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**필수과목 4과목** 이수
※ 시간제등록 운영 대학, 학점은행기관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포함한다.
 - 대학원 :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**필수과목 3과목** 이상 이수
- (현장실습 이수요건)
 -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으로 편성된 실습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.
 - 현장실습은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의 성적 산출 및 학점 부여 이전에 종료하여야 한다.

6 구성원별 역할

□ 양성기관

- 양성기관은 현장실습 시행계획 수립, 관련 규정 제·개정 등 현장실습 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 조정·관리를 수행한다.
- 양성기관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.
 - 실습기관 및 학생의 참여 신청·접수 관리 및 선정
 - 현장실습 사전교육(실습오리엔테이션 등)
 - 실습기관과의 협약 체결
 - 학생평가 및 학점인정 처리
 - 실습기관 및 학생에 대한 현장실습 운영실태 점검 및 지도

내 용	서 식
협 약	【양식 1】 현장실습 협약서
현장실습 의뢰	【양식 2】 실습의뢰서
방문지도	【양식 3】 현장실습 방문지도 확인서
실습결과 확인	【양식 4】 평생교육 현장실습 확인서

□ 실습생

- 현장실습 절차에 따른 참여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, 성실한 실습 수행

내 용	서식
실습수행	【양식 5】 실습일지

□ 실습기관

- 평생교육 현장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실습계획 수립
- 실습생 선발, 지도, 출결관리, 교육, 평가 실시

내 용	서식
실습의뢰 회보	【양식 6】 실습의뢰 결과 회보서
실습지도	【양식 7】 실습지도기록서
실습평가	【양식 8】 실습생 평가서 【양식 9】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
실습결과 확인	【양식 4】 평생교육 현장실습 확인서